

종합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25년 예천군 경상북도종합감사 —

2026. 2.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인사운영 부적정
소 관 청 예천군
관 계 부 서 가과 (전 나실)
내 용

예천군에서는 2022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 및 채용 등 인사업무를 처리하였다.

1.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부적정

「지방공무원법」 제27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에 따르면 자격증 소지자 및 관련분야 경력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시험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고 그중 관련분야 경력의 경우 임용예정 직급·직위와 같은 직급·직위에서의 근무경력 또는 임용예정 직급·직위에 상응하는 근무기간이나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에 상당하는 경력기준에 상응해야 하고 관련 경력은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경우 10년)이 경과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

한편, 「예천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5조 및 [별표 8]에 따르면 경력 등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를 채용하는 경우의 응시요건을 아래 [표 1]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표 1] 예천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자격기준(경력기준 채용, 지방공무원법27조제2항제3호) “생략”

따라서 예천군 가과(전 나실)에서는 자격증 소지자 및 관련분야 경력 등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관련분야 경력 등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등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해당 지자체 인사규칙에 명시된 응시자격요건 등을 채용공고에 명확하게 하여 채용목적에 맞게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이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했어야만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 ☆. ☆. ☆☆☆☆년도 제☆회 예천군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과 관련하여 ‘** ** 및 ** 분야’ 지방 시간선택제 임기제(나급)의 응시자격요건을 자격증 소지자가 아닌 관련분야 경력 등으로 설정하였고, 예천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 8]에 따르면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학력에 따른 경력 자격요건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응시자격기준에도 없는 별도의 4번 항목을 신설하여 경력없이 ♣·♣♣전공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응시할 수 있도록 채용공고를 진행하였다.

[표 2] ‘ ** 및 ** 분야’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나급) 채용공고문상의 자격요건 “생략”**

그리고 \$\$\$ 등 서류심사 합격자들 4명을 대상으로 ☆☆☆☆. ☆☆. ☆☆.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관련분야 경력이 없음에도 (4번)♣·♣♣전공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내역으로 자격요건을 충족한 \$\$\$이 최종합격자로 선정되자 ☆☆☆☆. ☆☆. ☆.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급)으로 임용하였다.

그 결과 관련법령 및 규칙에 따라 관련분야 경력 등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채용절차에서 관련분야 경력이 없는 \$\$\$이 시간선택제 임기제(*급) 공무원으로 채용되었으며, 반면 경력을 충족한 \$\$\$는 탈락되었다.

2. 조정할 수 없는 직렬을 대상으로 후속 승진임용 부적정

「지방공무원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의 사전의결,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공무원의 임용 교육훈련 보수 등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규칙안의 사전심의 등의 기능을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9조에서는 승진은 같은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되, 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및 제30조에 따라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 및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제2조에서는 공무원의 직급에 따른 직렬별(복수·단수) 정원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공무원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임용시험·승진·임용, 그 밖에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기재·증명·채점 또는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예천군 가과에서는 결원에 따른 승진임용을 위한 인사요인을 책정할 때에는 결원 발생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거나 복수직 정원이 있는 경우 그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직렬간에 직렬을 조정하여 인사위원회 사전 심의 후 승진임용했어야만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3]과 같이 ☆☆☆☆☆. ☆. ☆☆. ☆☆☆☆년 하반기 6급이하 승진인사를 위한 위사위원회 개최와 관련하여 ☆☆☆☆. ☆. ☆☆. 예정되어 있는 ****6급 \$\$\$의 정년퇴직에 따른 승진요인을 책정하면서 ** 7 → 6급의 경우 **** 직렬과 복수로 규정되지 않아 후속 승진이 가능하지 않았음에도 ** 7 → 6급으로 후속 승진 가능하다고 관련자료를 작성하여 ☆☆☆☆. ☆. ☆. **7급 1명을 **6급으로 승진임용되도록 하였고,

☆☆☆☆. ☆. ☆☆. ☆☆☆☆년 하반기 6급이하 승진인사를 위한 인사위원회와 관련해서는 ☆☆☆☆. ☆. ☆. 예정되어 있는 ****6급 \$\$\$의 퇴직준비교육에 따른 승진요인을 책정하면서 **** 7 → 6급의 경우 ****직렬과 복수로 규정되지 않아 후속승진이 가능하지 않았음에도 **** 7 → 6급 후속승진 가능하다고 관련자료를 작성하여 2025. 7. 1. **** 7급 1명을 **** 6급으로 승진임용되도록 하였다.

[표 3] 복수직 정원 없는 직렬간 조정 후 승진 현황 “생략”

그 결과, 복수직렬로 규정되지 않아 승진할 수 없던 직렬인 **6급 1명, ****6급 1명이 각각 승진임용하게 되었다.

3. 보건소장 직무대리에 따른 후속승진 임용 부적정

구 「지역보건법 시행령」(2024. 7. 3. 대통령령 제346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와 보건복지부 다과-****(☆☆☆☆. ☆☆. ☆☆.) 및 경상북도 라과-***** (☆☆☆☆. ☆☆. ☆☆.)의 “보건소장 임용 관련 안내”에 따르면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려는 실질적인 노력을 선행하였으나 불가피하게 임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

보건진료(이하 “보건 등”이라 한다.)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되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163조에 따르면 결원이 발생한 직위로 승진임용할 수 있는 바로 하위 직급 공무원 중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업무만을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구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25. 6. 26. 규칙 제1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 따르면 예천군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예천군 가과에서는 예천군 보건소장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역보건법에 맞게 의사 면허가 있는 기술서기관을 임용하되, 내부적으로 의사 면허가 있는 기술서기관을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사면허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기제공무원 채용 절차 진행 등 보건소장을 임용하려는 실질적인 노력 등을 선행하고 불가피하게 임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했어야만 하고, 그와 관련하여 보건 등 직렬 공무원 중 승진 소요연수를 경과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 직무대리 등을 검토하고 예외적으로 상위직급 결원으로 동일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했어야만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보건소장 결원의 경우 내부적으로 의사면허를 보유한 기술서기관 대상자가 없어 원칙적으로 외부에서 충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래 [표 4]와 같이 ☆☆☆☆. ☆. ☆☆. 인사위원회와 관련하여 사전에 의사면허를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기제공무원 채용 절차 등 실질적인 노력 등을 하지 않은 채 **5급 \$\$\$를 보건소장으로 직무대리 발령(☆☆☆☆. ☆. ☆)하고 그에 따른 후속 승진으로 ****5급 1명을 결원으로 책정하여 ****6급 \$\$\$를 5급으로 승진의결 되도록 한 후 ☆☆☆☆. ☆. ☆☆. 마과장으로 임용하였다.

[표 4] 보건소장 직무대리에 따른 후속승진 임용 현황 “생략”

그 결과, 보건소장과 관련하여 결원을 충원할 수 있었음에도 임의로 충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원을 이유로 직무대리가 이뤄졌으며, 이로 인해 예외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상위직급 결원을 이유로 하는 하위직급에 대한 임용 등이 부적정하게 적용되어 정원범위 내에서 관리되어야 할 5급 정원이 초과운영 되도록 하였다.

4. 인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자를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지방공무원법」 제7조 내지 제9조의2에 따르면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등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별로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인구 10만 미만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7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가능)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되,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지방의회의원은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위촉 후에도 정당의 당원, 지방의회의원 등이 되는 경우에는 그 직을 당연히 퇴직한다라고 되어 있다.

한편, 예천군 가과에서는 인구 10만 미만의 지방자치단체로서 위원장 1명, 내부위원 1명, 외부위원 5명 등 총 7명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각종 승진임용 사전심의 등의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예천군 가과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하되 외부위원들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상자의 정당 당원 가입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자격요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해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야만 하며, 위촉 후에도 수시로 자격요건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저촉사항 등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연 퇴직 절차를 진행했어야만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5]와 같이 ☆☆☆☆. ☆☆. ☆☆. 예천군 인사위원회 위원 위·해촉(나실-*****)과 관련하여 신규 위촉대상인 \$\$\$이 ☆☆☆☆. ☆☆☆월부터 바 책임당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음에도 자격 유무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로 ☆☆☆☆. ☆☆. ☆☆. ~ ☆☆☆☆. ☆☆. ☆☆.(3년 임기)까지 예천군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도록 신규 위촉하였다.

[표 5] \$\$\$ 위촉(☆☆☆☆. ☆월 이후) 후 예천군 인사위원회 운영 현황 “생략”

그 결과 ☆☆☆☆. ☆☆☆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었던 정당의 당원이 예천군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각종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등의 결정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인사행정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훼손되었다.

조치할 사항 예천군수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인사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관련자 AAA(병합)는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경징계” 처분하시고,
- ③ 관련자 BBB(병합), CCC(병합), DDD(병합)는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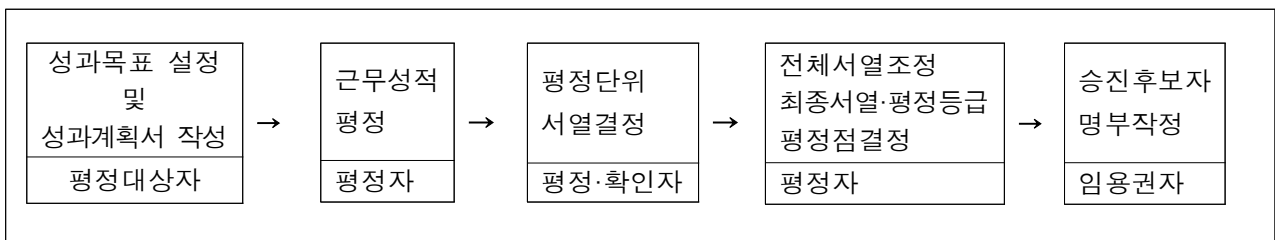
제 목 근무성적평정 및 공무원 상시학습 처리 부적정
소 관 청 예천군
관 계 부 서 가과 (전 나실)
내 용

예천군에서는 2022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및 공무원 상시학습 업무 처리 등을 처리 하였다.

1. 근무성적평정업무처리 부적정

「지방공무원법」 제76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정기 및 수시로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 승진임용,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참고] 지방공무원 평정절차 (2022년도 지방공무원 인사실무 지침)



한편,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9조 및 제27조 내지 제31조에 따르면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의 순위는 변경하지 않은 채 평정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임용권자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심사·결정한 평정점과 경력 평정점을 각각 만점으로 하여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

하도록 되어 있고, 단순 착오나 누락으로 명부에 명백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명부를 조정할 수 있되, 조정사유 및 조정내역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사후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예천군 가과(전 나실)에서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상정하는 근무성적 평정대상자의 순위와 평정점(안)을 작성할 때 제출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대조확인하여 순위를 변경하지 않은 범위에서 평정점을 심사결정하고,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업무를 하면서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심사·결정한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단순 착오나 누락으로 명부에 명백한 오류 등이 발생하여 근무성적평정점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점수를 조정된 후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사후 확인을 받아야만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 ☆☆. ☆☆. ☆☆☆☆년 하반기 5급 이하 근무성적평정과 관련하여 **6급의 전체서열이 \$\$\$(**위), \$\$\$(**위), \$\$\$(**위) 순으로 결정되었음에도 인사행정시스템에는 \$\$\$(**위) \$\$\$(**위), \$\$\$(**위) 순으로 입력 후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사후 확인 등의 절차없이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였고 ☆☆☆☆년 상반기 5급 이하 근무성적평정과 관련해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나실에서 제출한 **6급 서열명부에는 \$\$\$(*위), \$\$\$(*위) 순으로 작성되어 있었음에도 최종 서열명부에는 \$\$\$(*위), \$\$\$(*위) 순으로 변경한 후 ☆☆☆☆. ☆. ☆☆.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결정되도록 하였다.

[표 1]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심사결과에 다르게 인사랑 입력 내역 “생략”

[표 2]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변경한 채 근무성적평정 확정 내역 “생략”

그 결과,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의 순위가 유지되지 아니한 채 근무성적평정점이

심사·결정되거나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심사결과와 다르게 근무성적평정점이 인사행정시스템에 반영되었다.

2. 공무원 교육훈련(상시학습) 업무처리 부적정

가. 교육훈련 중복 입력자 승진임용 부적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2024. 5 28. 행정안전부예규 제287호)의 ‘II.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상시학습)제도 운영’ 편에 따르면 동일한 교육내용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동일직급에서 1회에 한하여 인정하되 기관별·직급별 필수교육,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법정 의무교육 등으로 재교육이 불가피한 사항과 연구사·지도사 및 일반직의 경우 해당 직급 재직기간 등을 감안하여 교육이수 3년이 경과한 경우 동일 교육과정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교육실적 인정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동일 연도 내 동일 과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상가지침에 따르면 교육훈련 부서에서는 교육훈련 실적의 적정관리를 위해 분기별로 점검하고 오류 및 부정 입력한 경우 교육훈련부서는 즉시 입력 내용을 삭제하고 부정 입력자에 대하여 필요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예천군 가과에서는 소속 공무원 대한 교육훈련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관리하여 동일직급에서 3년 이내에 동일과정을 중복으로 이수한 실적 또는 중복 입력한 실적 등을 즉시 삭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 실적을 채우지 못한 공무원의 경우 승진심사에서 제외되도록 했어야만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3]과 같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실적 점검·관리 및 적정 조치를 하지 않고 중복 입력(승인)된 교육훈련 실적을 삭제하지 아니 하였고, 중복 입력(승인)된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삭제하는 경우 승진심사일 기준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해서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어야 할 대상자를 승진임용하였다.

[표 3] 교육훈련 중복 입력자 승진임용 현황 “생략”

그 결과, 동일직급에서 동일과정을 중복 입력하여 실질적으로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채우지 못한 ** 7급→6급 \$\$\$ 등 10명이 승진심사에서 제외되지 못하고 승진임용 되었다.

나.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5급 교육이수실적에 미반영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2024. 5 28. 행정안전부예규 제287호)의 ‘II.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상시학습)제도 운영’ 편에 따르면 신규채용후보자 및 승진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은 채용 또는 승진된 직급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으로 적용하고 인사교육훈련부서(인사과 등)에서는 교육훈련부서 주관 교육실적을 입력 하되 승진임용 등의 경우 연간 교육훈련 시간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에 따르면 인사위원회 의결 결과 5급 승진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성적과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을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임용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예천군 가과에서는 5급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의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인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의 교육 이수 실적은

승진 직급인 5급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실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이와 관련한 해당자가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승진임용 등과 관련되었을 경우에는 교육훈련 시간 충족 여부 등을 정확하게 관리하여 승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어야만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4]와 같이 ☆☆☆☆. ☆☆. ☆☆. 인사위원회와 관련하여 4급 승진에 따른 승진심사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당시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대상자들의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이수시간을 반영하지 않고 승진에 필요한 교육이수시간을 산정하여 실제 승진에 필요한 교육 이수시간을 충족한 **5급 \$\$\$를 승진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로 체크 후 인사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승진심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표 4] 4급 승진임용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현황 “생략”

그 결과, **5급 1명이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이수시간을 충족하였음에도 미충족으로 표현되어 승진심사에서 제외되었다.

조치할 사항 예천군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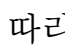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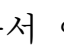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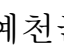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관련자 AAA(병합)는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경징계” 처분하시고,
- ③ 관련자 BBB(병합), CCC(병합), DDD(병합), EEE, FFF, GGG는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조사·통보한 자료로 평가하며,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경영상태 실적 관리를 하지 않는 업종은 해당업체가 작성한 정기결산서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작성절차에 따라 확인한 검토보고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고 되어 있다.

다만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용역은 “기업진단보고서”,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용역은 관할세무서에 제출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나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계약담당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된 서류의 미비, 오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자료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재난복구공사는 3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하게 하여야 하고, 기한까지 보완·추가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로 심사하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하며, 보완·추가서류를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 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르면 경영상태 평가방법은 제2장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인 기술용역은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예천군 가과에서는 추정가격²⁾이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    상주감리용역’의 재무비율 평가 서류로 관련협회 조사·통보 자료, 공인회계사 검토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이하 “기업진단보고서 등”이라 한다.)가 제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보완·추가 요구를 하여야 했고, 기업진단보고서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무비율을 최저등급으로

2) 예천군 공고 제☆☆☆☆-***호(☆☆☆☆.☆☆☆.)에 따르면 추정가격은 298,181천원

평가하여야 했으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주식회사 \$\$\$\$\$\$\$\$ \$\$’의 재무비율 평가를 하면서 기업진단보고서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7일 이내에 기업진단보고서 등의 보완·추가 요청을 하여야 함에도 위 업체가 제출한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를 정당한 적격심사 서류로 인정하여 아래 [표 2]와 같이 종합평점 95.44점으로 부적정하게 적격 판정하였다.

[표 2] 경영상태 평가 내역 “생략”

한편 위 사실이 감사기간 중 지적되어 계약담당자는 ‘주식회사 \$\$\$\$\$\$\$\$ \$\$’이 ☆☆☆☆. ☆☆. ☆.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위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이후 감사기간 중 발급받은 서류이며, 계약 체결 이전에 심사서류의 보완·추가를 요구하여 발급받은 서류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3]과 같이 재무비율 평가를 최저등급으로 정당하게 평가할 경우 종합평점이 93.04점으로 적격통과점수(95점)에 미달하는 ‘주식회사 \$\$\$\$\$\$\$\$ \$\$’과 ☆☆☆☆. ☆. ☆☆.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의 신뢰성이 저해되었으며, 차 순위 입찰자들은 적격심사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는 등 계약 상대자 선정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

[표 3] 적격심사 결과 “생략”

조치할 사항 예천군수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계약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관련자 AAA는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경징계” 처분하시고,
- ③ 관련자 BBB는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낙찰하한을 적용 오류로 인한 계약상대자 선정 부적정
소 관 청 예천군
관 계 부 서 가과
내 용

예천군 가과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및 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023. 1. 1. 행정안전부예규 제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낙찰자 결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년 ☁☁☁☁ ☁☁ ☁☁☁☁ ☁☁☁ 구입 단가계약’의 낙찰하한율³⁾을 80.495%로 공고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1] ☆☆☆☆년 ☁☁☁☁ ☁☁ ☁☁☁☁ ☁☁☁구입 단가계약 현황 “생략”

「지방계약법」 제9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 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3) 조달청 해석사례(공개번호 1806080029)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을 제외한 수행능력분야를 모두 만점 받는 경우 입찰가격평가에서 낙찰 가능한 최소한의 비율

10억 원 미만 고시금액⁴⁾ 이상인 물품은 위 기준 [별표 2]에 따른 낙찰하한율 80.495%,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은 위 기준 [별표 3]에 따른 낙찰하한율 84.295% 이상으로 투찰한 최저가 입찰자(적격심사 대상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 및 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2023. 1. 1. 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계약집행기준”) 제1장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이후부터 개찰 전까지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 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 입찰공고 내용에 중대한 착오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새로 공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예천군 가과에서는 「계약집행기준」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들이 입찰 참가자격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공고를 하여야 했고, 공고문의 낙찰하한율 등을 잘못 공고한 경우 개찰 전까지 해당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새로 공고를 하여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투찰한 적격심사 대상자의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일 경우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년 ☁☁☁☁ ☁☁ ☁☁☁☁ ☁☁☁구입 단가계약’의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209,090천 원임에 따라 낙찰하한율을 84.245%로 공고하여야 함에도 10억 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 낙찰하한율 80.495%로 잘못 공고(☆☆☆☆. ☆☆. ☆☆.)하였고, 개찰일(☆☆☆☆. ☆☆. ☆☆.)까지도 잘못 공고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여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새로 공고하지 못하였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2022. 1. 1.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9호, 2023. 1. 1. 폐지) 중 물품 및 용역의 경우 ‘2억 1천만 원’

그 결과, 위 부서에서는 정당한 낙찰하한율 84.245%로 공고하였을 경우 아래 [표 2]와 같이 81.054%(186,059천 원)로 투찰하여 적격심사 대상자가 될 수 없었던 ‘\$\$\$\$’와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최소 9,855천 원⁵⁾ 정도의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85.348%(195,914천 원)로 투찰하여 1순위 적격심사 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주식회사 \$\$\$\$’ 외 5개 차순위 입찰자들은 적격심사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는 등 계약상대자 선정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

[표 2] ☆☆☆☆년 ㉠㉠㉠㉠ ㉠㉠ ㉠㉠㉠㉠ ㉠㉠㉠ 구입 단가 계약 개찰현황 “생략”

조치할 사항 예천군수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계약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관련자 AAA는 훈계 처분하시고, BBB는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5) 정당한 낙찰하한율 84.245%로 공고하였을 경우 1순위 적격심사 대상자인 ‘주식회사 \$\$\$\$’ 투찰금액 (195,914천 원) - ‘\$\$\$\$’ 투찰금액(186,059천 원) = 9,855천 원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부과·징수 소홀
소 관 청	예천군
관 계 부 서	가
내 용	

예천군 가과에서는 2022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지방세법」 등 지방세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사후관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1. 상속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징수 관리 소홀

「지방세법」 제6조에 따르면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써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조제7항 및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상속개시일을 취득 시기로 본다 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에 따르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상속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예천군 가과에서는 상속 취득세 세원 관리를 위하여 사망자 내역, 상속대상 재산 자료, 주민등록상의 상속대상자 등 과세자료를 주기적으로 확인·대사하고, 상속대상자가 「지방세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상속 취득세를 적정하게 신고·납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여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직권 부과하고 징수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예천군 ☞☞면 ☞☞☞리 **-*번지 등 38필지의 소유자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대상자가 상속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신고·납부 기한이 지났음에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 등 36명의 상속 취득세 24,042,7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징수하지 않았다.

[표 1] 상속 취득세 부과대상 명세 “생략”

2.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소홀

가. 생애최초 주택 감면 대상자의 매각·임대 등에 대한 취득세 미추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에 따르면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및 취득 가액에 따라 산출세액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주택에 대한 상시 거주(본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예천군 가과에서는 본인 및 배우자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된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 등 2명이 예천군 숲소리 ****번지 ***-**** 등 2건에 대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으로 취득세를 면제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하여 취득세 감면의 추징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일 현재까지 취득세 7,020,2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징수하지 않았다.

[표 2] 생애최초 주택 감면대상자 매각·임대 추징대상 명세 “생략”

나. 자경농민 경작 목적 부동산 매각에 대한 취득세 미추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다만,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예천군 가과에서는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경감받고,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3]과 같이 ☆☆☆☆. ☆☆. ☆. 자경농민 \$\$\$가 예천군 읍읍면 읍읍리 ***-**번지 농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경감받고,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 ☆. ☆☆. 매각함에 따라 취득세 감면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일 현재까지 취득세 1,562,050원(가산세 미포함)을 부과·징수하지 않았다.

[표 3] 자경농민 유예기간내 매각 추징대상 명세 “생략”

3. 체육시설업 등록면허세 부과·징수 소홀

「지방세법」 제35조에 따르면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 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별표 1]에 따르면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신고체육시설업(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35조제2항에 따르면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예천군 가과에서는 체육시설업 면허를 취득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4]와 같이 ☆☆☆☆년~☆☆☆☆년까지 \$\$\$ \$\$\$\$ \$\$\$에 대해 매년 부과하여야 할 체육시설업에 대한 등록면허세 18,000원 (가산세 없음)을 부과하지 않았다.

[표 4] 체육시설업 등록면허세 미부과 내역 “생략”

그 결과, 열악한 예천군 지방재정에도 불구하고 정당하게 징수되어야 할 위 “1항” ~ “3항”의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총 40건, 32,643,010원이 세원의 발굴과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하여 부과되지 않음에 따라 「지방세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예천군수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주의)
- ② 부과·징수가 누락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총 32,643,010원에 대해 환수하는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붙임 1] 상속 취득세 부과대상 명세 “생략”

[붙임 2] 취득세 감면 대상자 추정대상 명세 “생략”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농지전용허가 처리 부적정
소 관 청	예천군
관 계 부 서	가과
내 용	

예천군 가과에서는 관내 농지에 단독주택을 건축하려는 민원으로부터 농지 전용허가 및 협의⁶⁾를 요청받아 「농지법」에 따른 전용 요건을 검토하여 이를 허가하는 등으로 농지전용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농지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시장·군수⁷⁾는 민원인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 외의 지역에 있는 농지를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부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제한면적 1,000㎡를 초과한 농지의 전용을 허가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5항에 따르면 전용제한 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동시에 또는 여러 차례에 걸쳐 그 시설이나 그 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접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과 그 농지전용허가신청일 이전 5년간 연접하여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해당 시설의 부지면적으로 본다⁸⁾고 되어 있다.

6) 복합민원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민원을 접수받아 농지전용허가를 협의하는 것을 의미

7) 「농지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30,000㎡ 미만의 농지전용 등에 대한 허가 및 협의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함

따라서 예천군 가과에서는 단독주택 건축에 관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받은 때에는 허가 신청일 이전 5년간 신청 농지와 연접하여 민원인이 전용허가 받은 농지가 있는지 확인하여 전용하려는 면적이 제한면적인 1,000㎡을 초과할 경우에는 농지전용을 허가하지 않아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예천군 ☁☁면 ☁☁리 ***-*번지의 농지전용허가 여부를 검토하면서 민원인인 '\$\$\$'이 전용하려는 농지와 연접한 농지에 ☆☆☆☆. ☆. ☆☆. 전용 허가받은 것을 고려하지 않아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전용 제한면적인 1,000㎡를 초과하는데도 ☆☆☆☆. ☆. ☆☆. 부적정하게 농지전용을 허가하였다.

[표] 농지전용허가 부적정 내역 “생략”

그 결과, 단독주택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전용허가 제한면적인 1,000㎡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을 위반하여 부적정하게 농지가 전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예천군수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관련자 AAA는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통 보·주 의 요 구

제 목 ㉮㉮㉮㉮㉮ 농지취득 부적정 및 소유농지 미경작
소 관 청 예천군
관 계 부 서 가과
내 용

예천군 가과에서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처분하게 하는 등의 농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 농지취득 부적정

「농지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르면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하고,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와 8년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등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는 있으나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장비·시설의 확보방안 등이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8년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농지이용 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 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등 이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이고 농업 외의 직전연도 종합 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자 등은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등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 하지 못하며,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장비·시설의

확보방안 등이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며, 법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그런데도 \$\$\$ 등 7명은 아래 [표 1]과 같이 12,252㎡의 농지 취득을 위해 농업경영계획서에 노동력 확보 방안을 ‘자기 노동력’으로 작성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한 후에 농지를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부친 등 가족에게 경작하게 하여 해당 가족이 직불금⁸⁾을 수령하였다.

[표 1] 농지취득 후 직불금 수령 내역 “생략”

그 결과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소유하지 못하며, 법령에서 정한 사유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농지법을 위반하였다.

2. 소유농지를 농업경영에 미이용

「농지법」 제10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한 경우에는 농지 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하도록 되어있고, 시장·군수는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처분 대상 농지, 처분의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리도록 되어 있다.

8) 직불금을 관리하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S)에는 직불금 신청자에게 지급하는 직불금 총액, 농지 소재지만 조회되고 필지별 직불금액은 조회할 수 없음.

그리고 「농지법」 제54조, 「농지법 시행규칙」 제63조,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의 범위」 제2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농지의 소유·거래·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조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가 인정한 농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예천군 가과에서는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사실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등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대상 농지를 처분하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농지의 소유 등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하여 아래 [표 2]와 같이 \$\$\$등 4명이 소유한 농지 8개 필지, 19,587㎡에 대하여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서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지도 않는 등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음에도 처분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다.

[표 2] \$\$\$\$ 소유농지 미경작 현황 “생략”

그 결과, 농지 소유자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하는 등 제한과 의무가 따름에도 불구하고 농지가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예천군수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주의)
- ②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관련법에 따라 실태조사 후 처분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③ 관련자 AAA, BBB, CCC, DDD, EEE, FFF, GGG, HHH는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보조사업 관리 부적정
소 관 청 예천군
관 계 부 서 가과
내 용

예천군 가과에서는 ☆☆☆☆년 \$\$\$\$\$\$(주)\$에 700,000천 원, 2023년 \$\$\$\$\$\$(주)\$에 700,000천 원의 〰〰〰〰〰〰〰〰〰〰〰〰〰〰 보조금을 아래 [표 1]과 같이 지원하였다.

[표 1] 〰〰〰〰〰〰〰〰〰 〰〰 보조 현황 “생략”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작성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고,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1. ☆☆☆☆년 〰〰〰〰〰〰〰〰〰〰〰〰〰〰 사업계획 변경승인 부적정

「지방보조금법」 제14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지방보조금법」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지방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지방보조사업의 수익금을 반납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예천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위원회의 기능으로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례 제8조제2항에 의하면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예천군 가과에서는 \$\$\$\$\$\$(주)\$에서에서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 사업’의 사업비에 대한 집행계획을 교부결정 시 확정하였다면, 이를 기준으로 집행실적을 심사하여 사업완료에 따른 잔액에 대하여는 당초 교부결정 당시 보조금과 자부담비율에 따라 재정산하여 보조금분의 집행잔액을 반납받거나, 보조사업 배분율의 변경 등을 할 경우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 교부 결정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당초 ♀♀♀ ♀♀♀ 및 ♀♀♀♀♀ 건축공사에 717,000천 원을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던 건축비의 낙찰차액⁹⁾ 72,672천 원(보조금 50,870천 원, 자부담 21,802천 원)을 보조사업자가 ☆☆☆☆☆. ☆. ☆☆. 예천군의

9) 「지방계약법」에 따라 나라장터 입찰 계약을 통해 추진하였으며 644,328천원에 낙찰

승인없이 추가 건축공사하는 것으로 변경계약을 진행하고 보조금의 낙찰차액분 50,870천 원을 집행하였음에도 ☆☆☆☆.☆☆.☆☆. 사업계획의 변경을 사후 승인하였다.

그 결과, 당초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이 완료된 비목에 대한 보조금 잔액이 보조사업자의 임의로 재집행된 것을 용인하여 예산절감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

2. ☆☆☆☆년 ○○○○○○○○○○○○○○○○○ 부가가치세 환급금 반환 미이행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9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 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예천군 가과에서는 보조사업자인 \$\$\$\$\$\$(주)\$\$\$\$가 사업종료 후 제출한 정산보고서를 적합한지 심사하고 보조금액을 확정하여 농업회사법인 (주)\$\$\$\$에게 금액을 확정통지하여야 하며, ☆☆☆☆년 ○○○○○○○○○○○○○○○○○ 지원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63,636,364원의 반환을 명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 \$\$\$\$\$\$(주)\$\$\$\$로부터 사업종료 후 정산보고서가 제출되어 정산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보조사업자에게 금액 확정통지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보조사업자인 \$\$\$\$\$\$(주)\$\$\$\$가 부가가치세를 전액 환급받고도 아래 [표 2]와 같이 보조금으로 발생한 부가세 환급금 63,636,364원에 대한 반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정산을 확정하였다.

[표 2] ☆☆☆☆년 ○○○○○○○○○○○○○○○○○ 지원사업 부가가치세 환급금 미반환 현황 “생략”

그 결과, 보조사업자에게 환급된 부가가치세가 「지방보조금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반환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예천군수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주의)
- ② \$\$\$\$\$\$(주)\$\$\$\$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63,636,364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관련자 AAA, BBB는 **훈계** 처분하시고, CCC, DDD는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태양광 전기발전사업 인허가 업무처리 부적정
소 관 청 예천군
관 계 부 서 가과
내 용

예천군 가과에서는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기본제도 확립 및 전기사용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년부터 현재까지 태양광 전기발전 사업허가 및 허가취소·위반사업장 행정처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전기사업법」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7조에 따르면 발전사업은 발전소를 적기에 준공하고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전기사업허가 신청서¹⁰⁾에 사업에 필요한 준비기간 및 사업개시 예정일을 포함하여 허가권자¹¹⁾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전기사업자는 허가권자가 지정한 준비기간에 사업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하여야 하고 준비기간은 10년의 범위¹²⁾를 넘을 수 없다고 되어 있고, 허가권자는 전기사업자가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10)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사업계획 개요(사업자명, 전기설비의 명칭 및 위치, 발전형식 및 연료, 설비용량, 소요부지면적, 준비기간, 사업개시 예정일 및 운영기간을 포함
11) 발전설비용량이 3천 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
1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훈령·예규·고시 등의 행정규칙이 제정되지 아니 하였거나 내부공문 및 업무지침 등의 형식으로 운용]

한편, 예천군 가과에서는 전기발전사업자에게 사업 준비기간이 도래할 경우 문자 및 유선 연락하여 허가증 자진반납 또는 기간연장을 안내하고, 준비기간 내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토록 공문으로 통보하고 있다.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사업 준비기간과 사업개시 예정일을 확인하고 허가권자가 지정한 사업준비 기간에 전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사업준비기간 총 10년을 경과한 2건을 포함한 준비기간 만료 후에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108건과 관련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전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함에도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표]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종료 사업자 현황 “생략”

그 결과, 사업준비 기간을 경과한 발전사업자에 대하여 허가취소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전사업의 적기 추진과 전력설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제정된 「전기사업법」의 취지를 훼손하였다.

조치할 사항 예천군수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주의)
- ② 사업준비 기간을 경과한 발전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관련자 AAA, BBB, CCC, DDD, EEE는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종료 사업자 현황 “생략”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예천군
관 계 부 서 가과
내 용

예천군 가과에서는 “㉹㉹㉹ 정비공사”를 ☆☆☆☆. ☆. ☆☆. (주)\$\$\$\$\$\$ \$\$\$과 계약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1] 사업 현황 “생략”

1. 소하천정비 시행계획 미공고

「소하천정비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르면 소하천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 소하천 등 정비와 그 유지관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하천을 지정한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관장하며, 관리청은 소하천 등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르면 관리청은 5년마다 종합계획에 따른 소하천정비 중기계획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하고, 중기계획에 따라 소하천 등 정비를 시행하려면 소하천정비 시행계획을 수립 및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시행계획을 관리청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실시
설계도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관리청인 예천군 가과는 소하천 등 정비를 시행하려면 소하천정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예천군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 일반인이 14일 이상
설시설계도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 정비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를 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소하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항을
일반인에게 알려 토지소유자 등의 재산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법 취지를 훼손하였다.

2.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미실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88조 등의 규정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를 받아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지구 등¹³⁾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을
고시하여야 하는 지역·지구 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 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1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조 : “지역·지구등”이란 지역·지구·구역·권역·단지·도시·군계획시설 등 명칭에
관계없이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가·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제5조 각 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발생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예천군 가과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 시설을 설치할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공보에 고시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본 공사를 추진하면서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등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부적정하게 공사를 착수, 시행하는 등 제반 행정절차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관련 법령의 취지가 훼손되었다.

3.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계획 미수립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2에 따르면 발주청¹⁴⁾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 등 건설공사의 시공을 관리하기 위하여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 등에 대하여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제1항에 따르면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계획에는 건설공사명, 시행기관명, 건설공사 주요내용 및 총공사비 등 건설공사

14)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함

기본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사업관리방식,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배치계획,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범위 등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예천군 가과에서는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본 공사를 추진하면서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 법령의 취지와 달리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행정의 신뢰성을 훼손하였다.

4. 안전관리비 부적정 계상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51조의 규정에 따르면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비를 공사원가계산서에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비용을 확정하기 어려운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및 통행안전 관리대책 비용 등은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이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 실적에 따라 정산할 수 있도록 계상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 안전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고 사후 정산함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예천군 가과에서는 본 공사의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안전관리비의 적용 절차를 준수하여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계상하지 않고 내역서 상 산출경비에 계상하였다.

그 결과, 안전관리비가 감액 적용되는 문제를 발생시켜 건설공사의 안전 확보를 위한 충분한 비용을 확보함으로써 건설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를 훼손하였다.

5.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부적정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¹⁵⁾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¹⁶⁾을 사용하는 건설공사의 사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후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대통령령으로


1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지하 10미터 이상 굴착공사, 높이 10미터 이상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사용 건설공사,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등

16)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및 브라켓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등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라 발주자는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건설안전점검기관¹⁷⁾을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거쳐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하고, 건설사업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 요청을 받은 발주자는 작성·관리중인 명부에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건설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르면 발주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 지정 방법 및 절차¹⁸⁾를 이행하고 지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예천군 가과에서는 향타 및 향받기,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을 사용하여 “ 정비공사”를 추진하면서 안전점검계획서 승인 내용과 동일하게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모집하여 건설공사 사업자에게 지정 및 통보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그림 1]과 같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공고문에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에 대한 안전점검을 제외하고 공고하는 등 안전관리계획 승인 내용과 다르게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 및 통보하였다.

1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

18)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 ① 시공자가 정기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위해 발주자에게 지정요청 → ② 발주자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작성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개모집 → ③ 모집 공고에 응하려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발주자에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제출 → ④ 발주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작성·관리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 ⑤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 받고자 하는 시공자는 안전관리계획의 안전점검비용을 첨부하여 발주자에 제출 → ⑥ 발주자는 7일 이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공고 → ⑦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공고한 수행기관 지정 방법에 따라 서류 등을 제출 → ⑧ 발주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 후 지정통보서를 시공자에게 송부 → ⑨ 시공자는 지정통보서를 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안전점검 수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

[그림 1] 안전관리계획서 상 수립대상 및 정기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 “생략”

그 결과, 안전점검 등을 통해 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해당 법령의 취지를 위반하여 공사가 추진되어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6. 공정률 관리 부적정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이하 “건설공사 업무수행지침”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계약서 그 밖의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해당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지침 제124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현장 조건에 부합여부와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지침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해당 공사가 정해진 공기 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의거하여 소요의 품질을 맞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지도하여야 하고,

공사 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누계공정 실적에 5% 이상 지연될 때는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분석, 근로자 안전확보를 고려한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수립을 지시하고, 공사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 등을 수립하여 정상공정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공량의 증감, 공법변경과 불가항력에 따른 공사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등의 현장실정 또는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진척 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 공정계획수립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예천군 가과에서는 “**㉮㉮㉮ 정비공사**” 감독 업무를 할 때 공사 진도율에 따라 부진공정 대책을 수립하여 정상 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공사 진척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 공정계획수립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본 공사를 추진하면서 아래 [그림 2]와 같이 ☆☆☆☆년 ☆☆☆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월간 누계공정 실적이 5% 이상 지연됨에 따라 부진공정 만회대책에 대해서 검토 및 확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점검하여야 함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림 2] **㉮㉮㉮ 정비공사** 예정공정표 “생략”

그 결과, “**㉮㉮㉮ 정비공사**”는 감사일 현재 실제 공정률이 29.6%로 예정공정률 66.2%에 비해서 36.6%나 부진한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예천군수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주의)
- ②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승인에 따른 안전점검, 부진공정 만회대책 등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관련자 AAA(병합)는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예천 ○○○○○○○○ 계획 변경 절차 및 설계대가 부적정
소 관 청	예천군
관 계 부 서	가과
내 용	

1. 산업단지계획 변경 절차 부적정

예천군 가과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예천군 ~~○○○○~~면 ~~○○○○~~리 일원에 “예천 ~~○○○○○○○○~~ 조성사업”을 위한 공영개발 방식으로 사업시행자 및 농공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표 1] 산업단지(농공단지) 사업 현황 “생략”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산업단지 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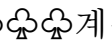
같은 법 제8조, 제15조 및 1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수립·승인된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¹⁹⁾는 산업단지 명칭,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주요 유치업종 또는 제한업종,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등을 포함한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절차를 거쳐 승인하고 그 결과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19) 예천군수

그리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르면 지정권자는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거나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합동설명회 또는 합동공청회를 개최하여 산업단지계획,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관련사항, 교통영향평가서 관련사항 및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0조에 따르면 지정권자는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필요한 관련 분야의 협의절차를 동시에 착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다만, 같은 법 제15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산업단지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의 면적변경, 주요 유치업종의 변경(도로를 제외한 기반시설의 용량이나 면적의 증가가 수반되는 경우로 한정),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의 변경²⁰⁾ 등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예천군 가과에서는 ☆☆☆☆. ☆☆. ☆☆. “예천 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된 내용 중 사업기간 변경에 대한 사항은 산업단지 계획을 수립하여 변경하여야 하며, 그 경우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되어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으나 관련 기관 협의에 대해서는

20)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의 변경이란 ①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 중 각 시설별 전체면적 대비 100분의 10이상의 면적 변경(증감을 포함한다), ②산업입지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의 규모(폐기물처리시설은 용량을 포함한다)가 100분의 50이상 변경되는 경우(제27조제1항제1호~제5호:항만·도로 및 철도, 용수공급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및 가스시설, 하수도·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산업단지의 공동구,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생략할 수 없고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예천 ㉠㉠㉠㉠㉠ 계획변경”을 추진하면서 사업기간 변경에 대한 사항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8조, 제10조 등에 따라 산업단지계획(변경) 수립 및 관련 기관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 ☆. ☆☆. 정정사항을 수정한다고 “예천 ㉠㉠㉠㉠㉠ 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하여 절차상 하자를 초래하였다.

그 결과,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적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농지법」 제34조,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라 농지전용 및 산지전용협의 요청서 상 협의한 기간과 산업단지 사업기간이 다르게 명시되어 혼선을 초래하는 등 행정 신뢰성을 저해하였다.

2. 산업단지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대가 부적정

예천군 가과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예천 ㉠㉠㉠㉠㉠ 계획변경”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표 2] 예천 ㉠㉠㉠㉠㉠ 조성사업 관련 추진현황 “생략”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사,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5조에 따르면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기본계획(기본설계를 포함한다), 실시설계는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활동의 주체가 담당하여야 하고, 기본계획, 실시설계 및 시공감리 요율은 아래 [표 3]과 같이 적용하여야 하나, 기본계획²¹⁾과 실시설계²²⁾를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에 한해서 해당 실시설계 요율의 1.4배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표 3] 조사설계 및 시공감리 요율

공 사 비	기본계획(%)	실시설계(%)	시공감리(%)	비 고
20억원 미만	1.78	2.75	1.53	
20억 ~ 30억원 미만	1.72	2.65	1.48	
30억 ~ 50억원 미만	1.69	2.60	1.45	
50억 ~ 100억원 미만	1.65	2.53	1.41	
100억원 초과	1.60	2.45	1.37	

* 자료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별표3 조사설계 및 시공감리 요율] 발췌

따라서 예천군 가과에서는 “예천 ☁☁☁☁☁☁ 조성사업”의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에 한해서 실시설계 요율의 1.4배를 적용하여야 했다.

-
- 21) **기본계획이란** 발주청은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기본 구상을 기초로 하여 공사의 목표 및 기본방향, 공사의 내용·기간, 시행자 및 공사수행계획,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기대효과와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기본설계란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감안하여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개략공사방법 및 기간, 개략 공사비 등에 관한 조사, 분석, 비교·검토를 거쳐 최적안을 선정하고 이를 설계도서로 표현하여 제시하는 설계업무로서 각종사업의 인·허가를 위한 설계를 포함하며, 설계기준 및 조건 등 실시설계용역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작성하는 것)
 - 22) **실시설계란** 기본설계의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방법과 기간, 공사비,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세부조사 및 분석, 비교·검토를 통하여 최적안을 선정하여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등을 작성하는 것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경상북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의견 반영 및 공사비 절감을 위해 세부조사 및 분석, 비교·검토를 통하여 최적안을 선정하기 위한 설계도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등을 작성하는 “예천 〰〰〰〰〰〰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면서 기본계획이 완료된 사업임에 따라 심의안건에 제시된 공사비 약161억원에 대해 기본계획 가중치(1.4배)를 제외한 실시설계요금 2.45%를 적용했어야 함에도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동시에 시행하는 요금($2.45\% \times 1.4\text{배} = 3.43\%$)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용역비 36,280천 원(제경비 포함)이 과다하게 반영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예천군수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주의)
- ②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이행하시고, 과다 계상된 사업비 36,280,000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관련자 AAA는 **훈계** 처분하시고, BBB는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 설치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예천군
관 계 부 서 가과
내 용

예천군 가과에서는 “㉸㉸㉸ ㉸㉸㉸㉸㉸㉸ 설치사업”을 아래 [표]와 같이 추진하고 있다.

[표] 공사 추진 현황 “생략”

1. 공원조성계획 변경 없이 휴게음식점 설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르면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이하 “공원조성계획”이라 한다.)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변경)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조성에 따른 토지의 이용, 공원시설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설치·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공원시설의 종류’에 따르면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²³⁾, 공원관리시설, 도시농업시설, 그 밖의 시설 등 구체적인 공원시설의 종류가 규정되어 있다.

23) 가. 우체통·공중전화실·휴게음식점[「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이하 “음식판매자동차”라 한다)를 사용한 휴게음식점을 포함한다]·일반음식점·약국·수화물예치소·전망대·시계탑·음수장·제과점(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한 제과점을 포함한다) 및 사진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공원이용객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시설

나. 유스호스텔

다. 선수 전용 숙소, 운동시설 관련 사무실,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 따른 대형마트 및 쇼퍼센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호에 따른 농산물 직매장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르면 편익시설 중 휴게음식점은 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에만 설치할 수 있으나, 부지면적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도시공원(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을 제외한다)의 경우 공원관리청²⁴⁾이 도시공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원시설 안에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예천군 가과에서는 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의 도시공원(문화공원)에 휴게음식점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이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원시설을 설치할 위치, 공원시설의 종류 및 사업 규모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완료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 ☺☺☺☺☺ 설치사업”을 추진하면서 ☆☆☆☆. ☆. ☆☆. 도시공원(문화공원)에 편익시설 중 전망대 설치를 위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한 후 ☆☆☆☆. ☆. ☆☆. 예천군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 ☆. ☆. 공원조성계획 고시)받았으나,

부지면적이 19,100 제곱미터 임에도 공원관리청인 나과와 협의 없이 공원조성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휴게음식점을 전망대(3층 카페조성)에 설치하는 것으로 ☆☆☆☆. ☆. ☆☆. 건축허가를 득하였고, ☆☆☆☆. ☆. ☆. \$\$\$\$\$\$(주)(대표 \$\$\$)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면서 감사일 현재까지 휴게음식점에 대한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정당한 행정절차 없이 당초 고시된 공원조성계획과 다른 시설물이 건축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4) 예천군 나과 : 도시공원, 녹지의 조성·관리 및 점용허가(예천군 실과 분야별 분장사무)

2.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부적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 등 건설공사의 시공을 관리하기 위하여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해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해당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이하 “건설사업관리계획”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²⁵⁾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계획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 관리방식, 건설사업관리²⁶⁾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배치계획, 그 밖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2 규정에 따른 ① 건설공사명, 시행기관명, 건설공사 주요내용 및 총공사비 등 건설공사 기본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사업관리방식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배치계획 ④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대상 여부 및 심의 결과 ⑤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 범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이하 “업무수행지침”

25)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26)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

이라 한다.)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르면 사업특성 및 발주청 역량평가를 통해 사업관리방식²⁷⁾을 배정하고 확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예천군 가과에서는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추진하는 경우 업무수행지침에서 정하는 평가를 통하여 적합한 건설사업관리 방식을 확정한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 ☞☞☞☞☞ 설치사업”을 추진하면서 연면적 1,415.39 제곱미터의 건축공사로서 공사 착공 전까지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사업특성 및 발주청 역량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점수(총점)가 71점으로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여야 함에도 \$\$\$\$\$\$\$\$(대표 \$\$\$)와 「건축법」에 따른 건축감리용역 계약을 ☆☆☆☆. ☆. ☆. 체결하여 상기 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미이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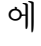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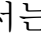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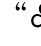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2에 따르면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브라켓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27) 1. 평가점수(총점) 80점 이상 :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에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한다)
2. 평가점수(총점) 50점 이상 :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에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할 수 있다)
3. 평가점수(총점) 50점 미만 : 직접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에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할 수 있다)

가설구조물, 높이가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이하 “관계 전문가”라 한다.)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가설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시공상세도면, 관계전문가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구조계산서를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예천군 가과에서는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에게 확인을 받아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   설치사업”을 추진하면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해당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함에도 거푸집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확인을 받지 않고 공사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가설구조물의 안전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등 건설공사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해당 법령의 목적과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공사원가 과다계상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 제4조, 제138조제1항, 제142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계약서 그 밖에 관계 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독업무에 임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설계도면·시방서와 자재의 사용 및 시공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그 밖에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예천군 가과에서는 건설공사 발주자로서 건설 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및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고,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 계상된 공정은 설계 변경하여 감액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 설치사업**”에 대한 예정가격 결정 시 부직포 깔기 작업은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기본 시공품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콘크리트 보양을 추가 적용하여 984천 원, 폴리에테르아방수 견적단가를 과다 적용하여 16,178천 원 등 사업비 17,162천 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되었음에도 설계도서의 수정·보완 없이 설계용역을 준공 처리하였다.

그 결과, 노무비 중복 적용 및 견적단가 과다 계상으로 인하여 사업비 17,162천 원(제경비 포함)이 과다하게 반영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예천군수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주의)
- ② 관련 규정에 적합한 공원시설 설치를 위한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가설구조물(거푸집)에 대해 조속히 구조적 안전성 확인을 받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과다 계상된 사업비 **17,162,000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 ④ 관련자 AAA는 **훈계** 처분하시고, BBB는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 부적정
소 관 청	예천군
관 계 부 서	가과
내 용	

예천군 가과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및 「경상북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 업무를 하고 있다.

1.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 부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건설업의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업무, 재무관리 상태, 시공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르면 건설사업자가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하되, 같은 법 제81조제9호, 제82조 제1항제5호 및 제83조제8호의2에 따라 실태조사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실태

조사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건설업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보고하도록 한 경우에 한정한다.)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관련 [별표 6]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르면 위반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발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하고,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7] ‘건설업 실태조사규정’에 따르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청문 등 제재처분 절차에 착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명령토록 하고, 시정명령 미이행 시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건설업 등록관청인 예천군 가과에서는 실태조사 대상업체로부터 보고자료를 제출받으면 지체없이 검토하여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고, 건설사업자가 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시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 ☆. ☆☆. 국토교통부로부터 등록기준 미달 실태조사 대상업체(33개 업체)를 통보(국토교통부 나과-****호, 경상북도 다과-***호)받고, ☆☆☆☆. ☆. ☆☆.부터 ☆☆☆☆. ☆. ☆☆.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내부결재를 득한 후 ☆☆☆☆. ☆. ☆☆. 해당업체에게 ☆☆☆☆. ☆. ☆☆.까지 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하도록 통보(예천군 가과-*****호)하였으나, 아래 [표]와 같이 6개 업체(9개 위반행위)가 감사일 현재까지 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등의 적절한 처분 없이 심사업무를 처리하지 않았고,

[표] 실태조사 보고 미이행 업체 행정처분 미조치 내역 “생략”

☆☆☆☆. ☆. ☆. 국토교통부로부터 실태조사가 지연되고 있어 빠른 시일 내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²⁸(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행정처분을 등록하거나, 처분이행 관리에 조치사항을 등록하라는 공문(국토교통부 나과-****호, 경상북도 다과-****호)을 접수받고도 감사일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심사업무를 처리하지 않는 등 관련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2.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업무 부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2호에 따르면 건설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는 위반행위별로 1년 6개월에서 10년의 범위에서 건설업을 다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 제외)하고 있다.

그리고 「건설업 관리규정」 제6장에 따르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폐업신고 수리 조치 전에 위법행위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청문 등 처분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처분여부 결정 후 처리하여야 하고, 시정명령을 받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가 불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건설업 등록관청인 예천군 가과에서는 등록말소의 원인이 되는 위반 행위별로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의 기간이 상이하므로 제재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폐업신고를 수리해서는 안되고, 건설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도 진행중인 처분절차를 조속히 완료 후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했다.

28)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 건설업 행정업무의 효율화 및 건설업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2001년에 구축한 시스템으로 건설업 등록·신고수리 및 건설업체 영업정지·과태료 부과 등의 정보를 관리하며, 재단법인 건설산업정보센터에 운영·관리를 위탁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위 실태조사에서 등록기준(자본금) 미달 실태조사 대상업체로 통보된 (주)\$\$\$(대표자 \$\$\$)에서 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음에도 폐업 예정이라는 건설사업자의 연락을 받고 정보시스템에 ☆☆☆☆. ☆. ☆☆. 전후로 “폐업 예정으로 처분불가”로 입력한 후 적절한 행정처분 없이 종결 처리 하였고,

등록기준(시설 및 장비) 미달 실태조사 대상업체로 통보된 \$\$\$\$\$\$(대표자 \$\$\$)에서 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 ☆☆. ☆☆. 영주세무서로부터 해당업체의 폐업 사실을 통보(영주세무서 라과-****호)받고도 정보시스템에 ☆☆☆☆. ☆☆. ☆☆. “그 외 사유 처분불가”로 입력한 후 시정명령 및 등록말소 등 적절한 행정처분 없이 심사업무를 종결처리하였다.

그 결과, 위 “1항” 및 “2항”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건설업체에 대하여 적절한 행정처분 없이 건설업 실태조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고, 실태조사 중 폐업사실이 확인된 건설업체에 대하여 진행중인 처분절차 이행 및 등록말소 처분을 하지 않는 등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및 관리업무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조치할 사항 예천군수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주의)
- ② 실태조사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조속히 이행하고,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등 적절한 행정처분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관련자 AAA는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 ○○○○○○○○○○○○○○○○○○○○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용역금액이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인데도 감사일 현재까지 용역평가를 하지 않고 평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설계업무를 수행한 용역업체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건설 관련 기술과 경험을 평가하여 건설 기술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법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업착공 미통보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 제48조에 따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자가 사업을 착공, 준공, 3개월 이상의 공사 중지 또는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후 재개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승인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예천군 가과에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할 때에 그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하고, 사업을 착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승인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 ○○○○○○○○○ ○○○○○○○○○(○○○○○○○○ ○○○○)”을 추진하면서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회신 공문³⁰⁾의 철저히 이행 요청 사항인 사업착공 신고를 승인기관에 통보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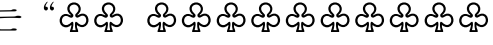
그 결과,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법적 의무이행 사항을 소홀히 하여 절차적 하자 및 행정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0)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회신[대구지방환경청 나과-*****(☆☆☆☆. ☆. ☆☆.)호]

3.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계획 미수립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2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 등 건설공사의 시공을 관리하기 위하여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 등에 대하여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예천군 가과에서는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 정비사업”를 추진하면서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임에도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그 결과,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 법령의 취지와 달리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사업관리 계획을 부적정하게 처리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훼손하였다.

4. 지장물(한전주) 이설공사비 부가가치세 과오납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조에 따르면 용역의 공급은 역무를 제공하는 것과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설계자의 기본임무)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건설사업관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건설사업관리, 설계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지침 제97조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도면, 개략적인 수량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실정보고 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득한 후 시공 조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예천군 가과에서는 공사감독 및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건설 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및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 계상된 공정은 설계 변경하여 감액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 ○○○○○○○○○○○○○○○○○○○”를 추진하면서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라 소하천 교량(9개소)에 대한 슬래브 합판거푸집을 4회에서 3회로 미변경하여 21,833천 원, 비탈규준틀 37개를 미설치하여 4,071천 원 등 총 2건 25,904천 원(제경비 포함)이 도급내역에 과다 계상되어 있는데도 감사일 현재까지 이에 대한 확인이나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공사 준공(공정률 99%)을 앞두고 있다.

또한, “○○○○○○ ○○○○○○ ○○○○○○○○○(○○○○○○ ○○○)”의 경우, 가설사무실을 설계시 반영된 규격과 다르게 컨테이너로 설치하여 37,537천 원, 시공상세도를 미작성하여 27,098천 원, 설계시 반영된 콤팩터를 진동롤러로 다짐하여 12,259천 원, 토공규준틀 44개를 미설치하여 5,424천 원 등 총 4건 82,318천 원(제경비 포함)이 도급내역에 과다 계상되어 있는데도 상기 사항에 대한 실정보고 없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그 결과,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공사감독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 소홀로 인해 공사원가가 과다 계상되거나 불필요한 공사금액 108,222천 원(제경비 포함)이 반영되는 등 사업을 부적정하게 추진하였다.

조치할 사항 예천군수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주의)
- ② 관련법령에 따라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를 실시하시고, 시공단계 건설사업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과오납한 부가가치세 2,816,237원은 회수하시고, 과다 계상된 사업비 108,222,000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④ 관련자 AAA(병합), BBB는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〇〇〇〇 〇 도시계획도로(〇〇〇-〇〇호) 개설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예천군
관 계 부 서 가과
내 용

예천군 가과에서는 예천읍 〇〇리 일원 “〇〇〇〇 〇 도시계획도로(〇〇〇-〇〇호) 개설공사” 등을 아래 [표]와 같이 추진하고 있다.

[표] 공사 현황 “생략”

1.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계획 미수립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2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 등 건설공사의 시공을 관리하기 위하여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 등에 대하여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예천군 가과에서는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〇〇〇〇 〇 도시계획도로(〇〇〇-〇〇호) 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임에도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그 결과,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 법령의 취지와 달리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사업관리 계획을 부적정하게 처리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훼손하였다.

2. 토석정보공유시스템 관리 부적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7조 및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제4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에 발생하는 토석이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토·순성토의 설계량과 발생량이 1,000㎥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고 절차에 따라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이용요령 제6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와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토·순성토 현황 등을 숙지하고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여 인근 건설공사 현장 등과 토석자원을 재활용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국토 환경훼손 방지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공사 관련 서류 검토·보고 시 공사착수단계에서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정보입력 및 갱신현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예천군 가과에서는 사토·순성토의 설계량과 발생량이 1,000㎥ 이상인 건설공사를 추진할 때에는 현황을 숙지하고 건설공사에 발생하는 토석이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고 절차에 따라 관리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 ☞ 도시계획도로(☞☞☞-☞☞호) 개설공사”의

사토 및 순성토량이 3,873㎡으로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입력 대상임에도 토석정보를 입력하지 않고 있어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인근 지역 현장간에 적정한 토석 이동·처리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발주청·시공사 간의 토석수급 조율실패로 인한 공사지연 및 비효율적인 토석 운반에 따른 예산낭비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3. 지장물(한전주) 이설공사비 부가가치세 과오납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조에 따르면 용역의 공급은 역무를 제공하는 것과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감사원 심사결정(2012년 감심 제147호)에 의하면 공익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지장물(한전주 등) 이설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대상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대가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예천군 가과에서는 공익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지장물(한전주 등) 이설비는 손실보상금으로 「부가가치세법」 상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므로 해당 부가가치세는 지급하지 않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 ☞ 도시계획도로(☞☞☞-☞☞호) 개설 공사”를 추진하면서 편입부지 내 한전주 이설에 따른 공사비 지급 시 해당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공익사업임에도 부가가치세 2,106,513원(☆☆☆☆☆. ☆☆. ☆.)을 과오납하였다.

그 결과, 지장물 한전주 이설에 따른 부가가치세 총 2,106,513원이 부적정하게 집행되어 공공재정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공사감독 소홀 및 공사비 과다계상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설계자의 기본임무)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건설사업관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건설사업관리, 설계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예천군 가과에서는 공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건설 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및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 계상된 공정은 설계 변경하여 감액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가설웬스 설치수량 160m가 감소하여 17,535천 원, 비탈사면 절취 후 설계시 적용된 추정(암) 토공량을 미정산하여 7,235천 원, 설계 시 반영된 콤팩터를 진동롤러로 다짐하여 2,995천 원, 토공규준틀 15개를 미설치하여 1,875천 원 등 총 4건 29,640천 원(제경비 포함)이 도급내역에 과다 계상되어 있는데도 상기 사항에 대한 실정보고 없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그 결과,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공사감독 업무 소홀로 인해 공사원가가 과다 계상되거나 불필요한 공사금액 29,640천 원(제경비 포함)이 반영되는 등 사업을 부적정하게 추진하였다.

조치할 사항 예천군수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주의)
- ② 관련법령에 따라 시공단계 건설사업계획을 수립하시고,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과오납한 부가가치세 2,106,513원은 회수하시고, 과다 계상된 사업비 29,640,000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④ 관련자 AAA는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ㄱㄱㄱㄱㄱ(ㄱㄱ, ㄱㄱ) 급수구역 확장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예천군
관 계 부 서 가과
내 용

예천군 가과에서는 ☆☆☆☆. ☆☆. ☆☆. \$\$\$\$\$(주) 대표이사 \$\$\$ 외 1개사와 계약하여 “ㄱㄱㄱㄱㄱ(ㄱㄱ, ㄱㄱ) 급수구역 확장사업” 등을 아래 [표]와 같이 추진 중에 있다.

[표] 공 사 및 용 역 현 황 “생략”

1. 설계용역 감독 및 검사 업무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르면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감독 또는 검사를 한 자는 감독 또는 검사의 결과 계약 이행의 내용이 당초의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감독조서 또는 검사 조서에 적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예천군 가과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용역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감독하여야 하고, 계약 이행이 끝난 후에는 과업지시서대로 이행하였는지 검사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 ㉠㉠) 급수구역 확장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면서 과업지시서에 포함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과업이 완료되지 않고, 최종 성과품 등이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별도의 조치 없이 ☆☆☆☆. ☆. ☆. 준공신고서를 접수하고, ☆☆☆☆. ☆. ☆. 준공검사를 완료하였다.

그 결과, 설계용역 감독 및 검사 업무를 부적정하게 하여 용역성과품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행정의 신뢰성 훼손과 공사착공 지연을 초래하였다.

2. 공사착공 전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수도법」 제3조에 따르면 일반수도란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를 말하며, 같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르면 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광역상수도) 또는 시·도지사(지방상수도), 또는 시장·군수(마을상수도)에게 각각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르면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8조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협의내용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이를 해당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확정·허가 등을 하기 전에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건설공사 발주자인 예천군 가과에서는 사업 시행 전에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일반수도사업 인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또는 일반수도사업 인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재해영향평가등 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 ☆☆. ☆☆. ♣♣♣♣♣♣(♣♣, ♣♣) 급수구역 확장사업 공사를 착공할 때까지 이행하지 않았다.

그 결과, 공사를 착공한 이후, ♣♣♣♣. ♣♣. ♣♣. 예천군 ♣♣♣♣♣♣ (♣♣♣♣♣♣ 급수구역 확장 사업) 인가(경상북도 나과-*****호), ☆☆☆☆. ☆. ☆☆. 예천 군관리계획(♣♣♣♣♣♣♣, ♣♣) 결정 및 지형도면등 고시(예천군 고시 제 ☆☆☆☆-**호), ☆☆☆☆. ☆.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 ☆☆.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완료하여 공사가 지연되는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누락 등 보상업무 추진 부적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인정 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공익성 협의)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르면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인가·승인권자 등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며,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다.

이에 같은 법 [별표]를 살펴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수도법」에 따른 수도사업 등이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공익사업의 시행자인 예천군 가과에서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해 보상계획 열람 공고 등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이행하고,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또는 일반수도사업 인가 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사업인정의제 협의(공익성 협의)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 ○○) 급수구역 확장사업”의 배수지 및 진입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보상계획 열람 공고 등 적절한 보상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마을 이장을 통하여 편입토지 소유자들과 구두로만 보상협의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토지보상법」상 보상협의 절차 미이행 및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등 사업인정의제 협의(공익성 협의) 조건 미비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 자체가 불가하게 되었고, 배수지 및 진입도로 편입토지 소유자들의 보상협의 거부로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다른 대체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불필요한 설계 변경과 공익사업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배수지 설계변경 부적정 등 공사관리 업무 소홀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설계자의 기본임무)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건설사업관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건설사업관리, 설계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건설공사 발주자인 예천군 가과에서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및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 및 공사관리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 계상 되어 있는 공정은 설계를 변경하여 감액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 ○○) 급수구역 확장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에서 언급한 사유로 인하여 배수지 및 진입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를 사용 또는 수용할 수 없게 되자,

☆☆☆☆☆. ☆☆☆월 경 당초 설계내용과 각 대안 별로 경제성 및 공사기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³¹⁾ 인근 ○○○면 ○○○리 산**번지 토지소유자에게 기공승낙서를 받아 배수지 위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내부회의를 통하여 방침을 결정하였다.

31) 용역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안1(○○○○리 산**번지)은 “진입도로 개설필요, 공사비 증가예상”으로 검토의견이 기재되어 있으나 증가금액 및 기존 설계안과 비교한 장단점, 공사기간 등이 면밀히 검토되지 못함

그 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수지 재설계 용역비 반영 실정보고에 대해 ☆☆☆☆. ☆. ☆☆. 승인 통보하여 시공사에서 재설계 용역을 시행하였고, 재설계 (안)으로 일반수도사업 인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이행하였으며,

☆☆☆☆. ☆☆. ☆☆. 공사 착공 후 2년 4개월이 지난 ☆☆☆☆. ☆. ☆☆. 아래의 [그림]과 같이 배수지 설치 위치 변경에 따른 실정보고를 책임건설관리 기술인에게 조건부³²⁾ 승인 통보하였다.

[그림] 배수지 위치 변경 현황 “생략”

그 결과, 배수지 위치 변경에 따른 재설계비 55백만 원, 공사비 1,454백만 원 등 사업비 1,509백만 원(제경비 포함), 보상비³³⁾ 등이 불필요하게 증액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감사일 현재까지 배수지 및 진입도로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있어, 공기연장에 따른 시공사의 추가 간접비(노무비, 경비 등) 청구,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증가 등이 예상되는 등 사업을 부적정하게 추진하고 있다.

또한 위 부서에서는 상기 공사를 추진하면서 관상부 다짐이 콤팩트 다짐으로 설계에 반영되어 있으나 진동롤러로 다짐하여 72,276천 원, 아스팔트 덧씌우기 단가에 아스팔트스프레이어 단가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텍코팅 단가를 중복으로 계상하여 3,764천 원, 조립식 간이 흙막이 일부 구간 미시공 및 현지여건과 상이하게 단가를 산정하여 31,125천 원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는데도 감사일 현재까지 이에 대한 확인이나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등 공사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32) 실정보고 조건사항 : 1. 환경보전비 :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구분하여 작성(경비항목) 2. 당초 설계 검토시 보강토옹벽 → 패널식옹벽 바뀐 사유(구조검토서 첨부) 3. 사급자재(일부) → 관급자재 검토 (예시 : 가드레일, 패널옹벽 등)

33) 진입도로 추가 개설로 보상비 증가가 예상되나, 당초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미실시로 구체적인 보상비 증가액은 추정이 어려움

그 결과, 다짐장비 변경, 단가 중복 계상 등으로 공사비 107,165천 원(제경비 포함)이 과다하게 반영되는 등 사업을 부적정하게 추진하였다.

5.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절차 미이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12절(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제1관 2.에 따르면 해당 공사에 적용할 신기술·특허공법의 추정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며 타 공법과 비교하여 해당 공법 적용 시 명백한 예산 절감·공기 단축의 효과가 있거나 계약목적물의 완성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공법선정 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에 추정금액 1억 원 이상의 신기술·특허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같은 기준 제1장 제12절 제2관 공법선정 절차에 따라야 하고, 그 절차를 보면 사업부서는 해당 신기술·특허 공법의 검토를 위해 한국국토교통기술진흥원, 한국특허정보원 등 관련기관 제공자료 등을 활용하여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고, 설계에 신기술·특허공법을 반영하려는 경우 해당 공사와 관련한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공법선정 안내 공고에는 사업의 규모, 예정공사기간, 소요예산 등 사업개요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공법 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의 평가 등을 통해 제안 참여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해당 계약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제안 중 정량적 평가분야와 정성적 평가분야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받은 자의 공법을 1순위로 선정하고 공법 선정된 자와 제안된 공법에 대해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예천군 가과에서는 건설공사에 적용할 신기술·특허공법의 추정금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과 절차에 따라 신기술·특허공법을 해당 공사에 반영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 ☞☞) 급수구역 확장사업”을 추진하면서 책임건설관리기술인이 제출한 배수지 설치 위치 변경에 따른 실정보고에 신기술·특허공법인 패널식 옹벽 518백만 원(제경비 포함)이 도금액에 반영되어 있는데도 공법선정위원회 심의 등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절차 이행 없이 내부 검토만을 실시하고, ☆☆☆☆. ☆. ☆☆. 패널옹벽 관급자재 검토 조건으로 실정보고 승인(조건부) 통보하여 신기술·특허공법을 해당 공사에 반영하였다.

그 결과, 추정금액 1억 원 이상의 신기술·특허공법을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에 반영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건설사업을 추진하여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예천군수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신기술·특허공법을 공사에 반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절차를 이행하시고, 과다 계상된 사업비 107,165,000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관련자 AAA, BBB는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경징계” 처분하시고,
- ④ 관련자 CCC, DDD는 훈계 처분하시고, EEE는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